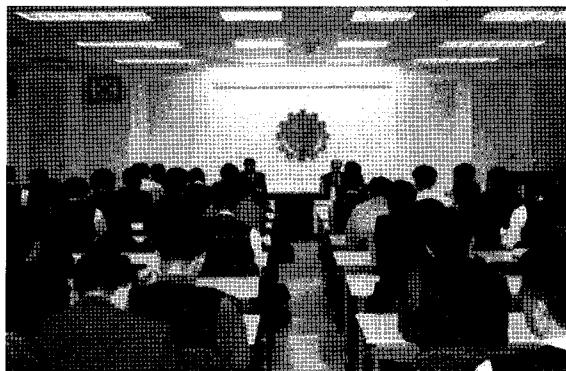


공정거래모니터요원 제2차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1월 28일(수)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및 강원지역 공정거래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2001년도 제2차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유중곤 사무관, 경쟁촉진과 엄기섭 사무관, 약관 제도과 서창현 주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약관제도의 의의 및 운영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공정위 사무처장 초청 강연회 및 임시 회원총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1월 29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에서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공정거래제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동 강연회에서 조학국 사무처장은 직권조사 등에 의하여 규제하는 법집행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중이고 이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포상, 제재수준 경감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순위기준(30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가맹사업거래 및 소



비자보호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등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약관제도에 있어서 현재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표준약관 심사청구에 의해서만 공정위가 위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연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본 협회 임시 회원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동 총회에서 이양순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제2기 공정거래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김 용 신임회장은 인사말씀에서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며, 정책당국과의 협력 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임원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 인사이동에 따라 김홍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이 본 협회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

질의 | 응답

문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서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신용평가에 드는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완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은 다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면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면제대상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통 고시 규정은 건설공제조합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 기준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할인 판매

본 협회에서는 이번 11월부터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향후 판매할 예정이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2001. 1. 16.개정)과 동 시행령(2001. 3. 27.개정), 하도급법, 약관법(2001. 3. 20.개정), 표시광고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 및 관계법령과 해당 심결사례를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1 공정거래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775-8870 ~ 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Internet Homepage(www.ftc.go.kr)에서 구입신청 양식을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 목차 안내

I. 公正去來法

1.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2001. 1. 16. 개정> 및 시행령<2001. 3. 27. 개정>
 2. 告示 · 指針 등
 - 1) 市場支配의地位濫用行爲의審查基準<2000. 9. 8. 제정>
 - 2) 企業結合의申告要領
 - 3) 企業結合審查基準
 - 4) 持株會社關聯規程에 관한解釋指針<2001. 5. 2. 개정>
 - 5) 持株會社의設立 · 轉換의申告 및持株會社의株式所有現況등의報告에 관한要領<2001. 5. 개정>
 - 6) 企業結合申告規定違反事件에 대한過怠料賦課基準

- 7) 企業結合關聯是正措置不履行에 따른履行
强制金賦課基準<2000. 12. 23. 제정>
 - 8) 共同行爲及競爭制限行爲의認め可申請要領
 - 9) 入札秩序公正化에 관한指針
 - 10) 事業者團體活動指針
 - 11)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特定不公正去
來行爲의類型 및基準指定告示
 - 12) 景品類提供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類型
및基準<2000. 4. 25. 개정>
 - 13) 並行輸入에 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告示
 - 1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不公正
去來行爲의基準指定告示
 - 15) 大規模企業集團의不公正去來行爲에 대
한審查基準

- 16) 不當한支援行爲의審查指針
- 17) 大規模內部去來에 대한理事會議決定公
示에 관한規程<2000. 4. 1. 제정>
- 18) 國際契約上의不公正去來行爲등의類型
및基準
- 19) 國際契約審查要請要領
- 20) 公正去來委員會會議運營및事件節次等
에 관한規則<2000. 12. 5. 개정>
- 21) 法違反事實의公表에 관한運營指針
<2000. 6. 13. 개정>
-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등에의
己利害關係人등에 대한經費支給規程
- 23) 過徵金賦課細部基準등에 관한告示
- 24) 滯納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 2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違反行
爲의告發에 관한公正去來委員會의指針
- 26) 公正去來委員會訴訟事件受任辯護士報
酬規程
- 27) 還給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2001. 3. 27. 제정>
- 28) 知的財產權의不當한行使에 대한指針
<2000. 8. 30. 제정>

II. 下都給法

1.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
示<2000. 5. 23. 개정>
 - 2) 製造委託의對象이되는物品의範圍告示
 - 3) 先給金等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告示
 - 4)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告示
<2000. 10. 13. 개정>
 - 5)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2000. 3. 29. 개정>
 - 6) 下都給法違反事業者에 대한過徵金賦課
指針

III. 約款規制法

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

IV. 表示·廣告法

1. 表示·廣告의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不當한表示·廣告行爲의類型 및基準指定
告示
- 2) 注油所등石油販賣業에 있어서서의供給者表
示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 및基準
- 3) 住宅의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4) 環境關聯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5) 商街등의分讓및實質表示·廣告에 관한審
查指針
- 6) 銀行등의金融商品表示·廣告에 관한審查
指針
- 7) 保險商品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8) 受賞·認證등의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9) 通信販賣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10) 廣告實證에 관한運營指針<20000. 12.
22. 개정>
- 11) 臨時中止命令에 관한運營指針
- 12) 重要한表示·廣告事項告示<2001. 5.
2. 개정>
- 13)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2000. 1. 6.
제정>
- 14) 訂正廣告에 관한運營指針<2000. 12.
22. 제정>
- 15) 消費者被害一括救濟에 관한運營指針
<2001. 3. 31. 제정>

V.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의 적용 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 관 한法律

VI.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 割賦去來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I. 公正去來委員會運營

1. 公正去來委員會職制<2000. 2. 28. 개정>
2. 公正去來委員會職制施行規則<2000. 5.
19. 개정>
3. 公正去來委員會委任專決規程<2000. 11.
15. 개정>
4. 地方事務所業務處理指針
5. 公正去來委員會所屬公務員人事管理規程